2007. 1.
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**제 목 :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**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발의자 : 김명섭 의원 (서명또는 날인)

외 2인

#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

| 의원성명 | 서명 또는 날인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성 명 중 | | |
| 김 명섭 | | |
| 劉永和 | 김 명 화 | |
| | | |
| | | |

#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안번호 | 1122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07. 1. .
발 의 자 : 김봉수 의원외 2인

## 1. 제안이유

제천시에서「팀」제를 도입하면서「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」를 개정 2007. 1. 26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 「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제2조(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))

1. 부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중 본부장, 팀장
3.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
4.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직속기관은 시 본청의 팀장, 사업소는 시 본청의 5급상당 팀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

## 3. 관련법규

- 해당없음

붙임 1.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 · 구조문대비표 1부 끝.

#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))

1. 부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중 본부장, 팀장
3.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
4.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직속기관은 시 본청의 팀장, 사업소는 시 본청의 5급상당 팀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**제2조(범위)** 생략<br>1. (생략)<br>2. 시장의 보조기관중 **국장·실장 및 과장급**<br>3. (생략)<br>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장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| **제2조(범위)** 현행과 같음<br>1. 현행과 같음<br>2. ····· **본부장·팀장** ····<br>3. 현행과 같음<br>4. ·····<br>직속기관은 시 본청의 팀장, 사업소는 시 본청의 5급상당 팀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|